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 변경 및
자격요건 신설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93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 변경	2
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 신설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

다.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가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 변경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안 제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략) ② 사장은 <u>제13조에 따른 이사회</u> 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④ (생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9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u>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라 함)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같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²⁾하는 것과 달리 EBS 사장은 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별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EBS 사장의 임명권자를 방미통위 위원장에서 KBS 사장과 같이 대통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최근 EBS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BS 사장 및 이사회와 관련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25년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①이사회 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②EBS 사장의 임명절차를 이사회에 제청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③이사 수 증원 및 이사 추천권자를

2)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에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다양화하는 방향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지난 9월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 중임.

○ 둘째, 사장 및 이사회 임명주체 동일성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방미통위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이사회 및 다른 제도적 수단 등을 통해서도 확보 가능하고, 현행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각각 KBS와 EBS의 관리감독 기관(이사회) 및 집행기관(사장)의 임명주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EBS 사장의 임명권자만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여·야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³⁾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방미통위의 동의를 받아 방미통위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임.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이를 종합하면, EBS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EBS 사장 임명 절차와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점, 사장·이사회 임명주체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미통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사장의 자격요건) 사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학·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또는 그 밖에 교육·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

현 행	개 정 안
	<u>력이 있는 사람</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EBS 임원⁴⁾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BS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행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⁵⁾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정당,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 선거 활동 등과 관련되었거나 관련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EBS의 설립 목적⁶⁾을 고려할 때, 교육, 방송, 언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 EBS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할 필요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EBS 사장 선임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임명 또는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EBS 운영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자격요건>

1. 교육학·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또는 그 밖에 교육·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EBS 임원 선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개정을 통해 ①EBS의 이사 수를 증원하는 동시에 이사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였고, ②사장 임명에 있어서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음.
- 최근 변경된 법령에 따라 EBS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제도를 재차 개편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사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상세히 규정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유입에 제약이 되어 사장 후보자군 모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사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능력·경험 등 종합적 역량이 요구되는 직위임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를 종합하면, EBS 사장의 자격요건 신설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최근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재차 개정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사장 선임을 제약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EBS 임원(사장 및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려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449호,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